

부의장 사임의 건

의안 번호	236
----------	-----

제의연월일 : 2023. 12. 21.
제 의 자 : 의 장

1. 제의이유

- 「김해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1조(의장, 부의장의 사임)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5일 제출된 최동석 부의장의 사임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연번	성명	직위	소속정당	사임서 제출일자	사임사유
1	최동석	부의장	더불어민주당	2023.12.15.	일신상의 사유

3. 관계법규

-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

제11조(의장, 부의장의 사임)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
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